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 사 보 고 서

2025. 2. .

환경노동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14일, 박홍배의원 등 11인

나. 회 부 일 자: 2024년 6월 1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4.9.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2025.2.1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  
안반영폐기)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2.20.)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 2. 제안설명의 요지

(박홍배의원)

최근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 관련

인증에 대한 부적정 사용이 늘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 등 환경 관련 인증에 대한 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인증 유효기간 및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 등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아울러, 영세한 환경전문공사업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한 경우에도 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 관련 인증제도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1)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대한 관리 강화

환경표지란 해당 제품이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대하여 이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환경성적표지란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함<sup>1)</sup>.

---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다.

제18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재료와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각 해당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5. 제17조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및 인증취소, 제18조와 제23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업무: 환경 관계 기관이나 단체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33조(위임 및 위탁) ⑧ 법 제3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말한다.

현행법은 환경표지 또는 환경성적표지(이하 “환경표지등”이라 함)의 인증을 받은 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sup>2)</sup>,

최근 친환경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과 함께 환경표지등의 부정 사용도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 최근 5년간 환경표지인증 취소 현황 ]

(단위 : 개, 제품)

| 구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합 계      | 131  | 153  | 172  | 187  | 182  |
| 사후관리 거부  | -    | -    | 9    | 11   | 1    |
| 생산중단     | 51   | 13   | 13   | 6    | -    |
| 인증기준 부적합 | 80   | 140  | 150  | 170  | 181  |

※ 출처: 환경부

이에 개정안은 ①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네이버, 옥션 등)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통신판매중개하는 제품의 환경표지등에 관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명령을 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3.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유통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4.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출입·검사 또는 조사·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5. 그 밖에 환경표지의 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인증기관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내용과 다른 재료와 제품에 환경성적표지를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3.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재료와 제품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유통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한 표시 또는 광고가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된 경우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위반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② 환경표지등의 유효기간 등 인증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sup>3)</sup>하고, ③ 환경표지등의 무단 사용<sup>4)</sup>에 대한 현행 벌칙을 강화(2년, 2천만원 이하 → 3년, 3천만원 이하) 하려는 것으로,

환경표지등의 인증 등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 제22조제3항은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환경표지등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가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되면 이를 수정·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표시 또는 광고의 사실 여부 확인의 주체, 방식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

3) 신설되는 인증 관련 규정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인증 유효기간   | 3년<br>※ 업무규정에서 규정함                            | 3년<br>(종료기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로 정할 수 있음)                                                         |
| 인증 연장 요건  | 유효기간 종료 시 인증 기준을 충족한 경우 연장 가능<br>※ 명문의 규정은 없음 | ① 유효기간 종료일 기준 인증기준과 인증 당시 인증기준이 동일하고, ② 기존 인증제품과 유효기간의 연장이 신청된 인증제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충족하면 연장 가능 |
| 인증 취소 요건  | 환경규제기준 미준수<br>※ 환경부 고시로 정한 인증기준 부적합 사유에 해당    |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 또는 그 임원이나 종업원이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데 있어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
| 인증 재신청 제한 | 인증이 취소된 제품은 1년 이내에 인증 재신청 불가                  | ① 비교적 중대한 사유(속임수 등)로 그 인증이 취소된 자 : 3년<br>② 비교적 경미한 사유(인증제품 미유통)로 그 인증이 취소된 제품 : 1년               |

4)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하거나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환경표지등을 제거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통신판매중개하는 제품의 표시·광고를 직접 수정·삭제하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측면에서, 환경표지등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가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이를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통보하여 수정·삭제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형태로 규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위반 내용의 공개는 사실행위로서 그 자체로는 법적 효과를 가져오지 않지만, 해당 사실의 공개를 통하여 사업자 등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는 등 사익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조사 결과 공개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과의 비교형량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즉, 개정안 제22조제4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및 동기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공개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국민건강보험법」은 공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횡수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sup>5)</sup>.

---

5)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제98조 또는 제9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반행위, 처분 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횡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 500만원 이상인 경우

2.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셋째, 개정안 제22조의2제3항은 유효기간 종료일 기준 인증기준과 인증 당시 인증기준이 동일함을 환경표지등의 유효기간 연장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① 환경표지는 제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② 환경성적표지는 제품이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작성지침에 맞게 작성된 경우 인증<sup>6)</sup>하도록 하고 있는바, 개정안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요건에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보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넷째, 개정안 제23조제1항제2호는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 또는 그 임원이나 종업원이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데 있어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 관련 법령 및 위반행위의 종류, 범위 등에 대하여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행법 제16조의3에서는 녹색기업 지정취소 사유를 하위법

---

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의 선정·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대상이 되는 재료와 제품의 선정·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작성지침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경성적표지가 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작성지침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이에 맞게 작성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령으로 위임하여 구체화하고 있음<sup>7)</sup>.

다섯째, 개정안 제23조제5항은 인증취소 사유에 따라 구분하여 환경표지 인증 재신청 대상 및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현행법 제23조제2항제2호의 사유가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2) 환경전문공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환경전문공사란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하며,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sup>8)</sup>.

현행법은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을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전문공사업자”라 함)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전문공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등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sup>9)</sup>하고 있는데,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3(녹색기업의 지정취소) ①환경부장관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녹색기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환경전문공사”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 나.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
  -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①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이하 “환경전문공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⑤ 시·도지사는 환경전문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영업정지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면 주변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영업정지 사유인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중대한 법령 위반이 아닌 비교적 고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 중지 등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감소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는 영업정지를 할 경우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금전적 제재로 대신하려는 것이므로,

환경전문공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가 환경오염 예방 또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 요건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3. 1년에 두 번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5.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6.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환경전문공사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전문공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8. 도급받은 공사를 한꺼번에 하도급한 경우
9.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참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사업정지 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sup>10)</sup>.

####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생 략

#### 6.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 7.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 8. 기타사항

없 음.

---

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15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